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례관리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7조)

법 제11조가 도움필요 아동·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이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전담조직에 사례관리 신청서, 친족관계 및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 (안 제10조)

1) 법 제13조 및 제14조가 전담조직의 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날부터 1

4일 이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 지원대상자의 상황 변화 및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도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례관리의 종결(안 제11조)

- 1) 법 제14조제5항이 전담조직의 장이 사례관리 종결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사례관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더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사례관리 종결을 요청한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2) 사례관리를 종결할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종결사유와 안내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라. 자기돌봄비(안 제12조)

- 1) 법 제19조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도록 함
- 2) 자기돌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를 전담조직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의 제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기돌봄비를 신청한 것으로 봄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함

- 5) 자기돌봄비 사용 기한을 지급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함

마. 시설급여 이용 지원 제외(안 제13조)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자를 제외함

바. 전담조직 지정·위탁 등(안 제14조)

법 제22조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있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3년 이상의 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설치·운영·인력기준을 갖춘 기관·단체·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위탁을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전담조직 평가, 지정·위탁 취소(안 제15조 및 제16조)

- 1) 법 제22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

여 평가 및 취소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된 경우, 설치·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연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2기 이상 평가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조사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전담조직에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도록 하고, 지정·위탁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전담조직에 이를 알리도록 함

아. 전문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 및 제24조)

1) 법 제26조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게함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 기준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함

2) 법 제26조제2항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인증 자체평가 보고서, 경영계획 및 실적,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등을 첨부

하도록 함

자.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안 제25조)

법 제26조제5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전문기관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이용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기아동·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전화번호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전화번호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1. 전화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전화번호의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3. 전화번호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례관리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담조직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움필요 아동·청년과 동거하는 친족이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움필요 아동·청년과의 친족관계 및 사례관리 신청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상담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과 협의하여 사례관리 계획에 지원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및 새로운 욕구 발생 등

으로 인해 사례관리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례관리의 종결) ①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사례관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 본인이 사례관리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전담조직의 장은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례관리의 종결 사유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의견을 제출하는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5. 의견제출 기한
6. 그 밖에 사례관리 종결 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제12조(자기돌봄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조직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의 제출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기돌봄비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

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⑨ 자기돌봄비의 사용 기한은 제8항에 따른 이용권이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시설급여 이용 지원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

제14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위탁을 신청하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담조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설치 및 운영 기준 : 별표 1

나. 인력 기준 : 별표 2

2. 3년 이상의 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조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설치·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전담조직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조직 지정·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상 전담조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된 경우
2.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전담조직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4. 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

5.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인력 관리,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연계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2기 이상 평가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조사된 경우

7.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전담조직의 명칭 및 주소

3. 지정·위탁 취소의 사유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및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전담조직이 제2항제6호에 따른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하고, 해당 전담조직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 취소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

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열람·처리할 수 있다.

1. 위기아동·청년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포함한다), 가구 특성 및 거주 환경에 관한 정보

2. 위기아동·청년 가구(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돌봄대상가구를 포함한다)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외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열람·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상담·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청년에 대한 상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실행 및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종결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연계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연계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운영 등에 관한 업무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전담조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를 열람·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발굴, 상담, 신청, 사례관리, 지원·연계 등 전담조직의 업무에 따른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위기아동·청년 발굴 정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의 보유 기한은 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0조(위기아동·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으로 의심되는 아동·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그 신변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신변확인을 실시하고, 그 현장방문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1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전화번호 조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원스톱 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고립·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전문기관 인증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3.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기관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전문기관의 인증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법인·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인증 자체평가 보고서
2.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4. 위기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홍보
2. 위기아동·청년 관련 시설개선 지원
3. 위기아동·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6조(개인정보 및 지원이력의 파기)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 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

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업무수행의 내용, 범위, 기간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수행 실적과 운영 상태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포함된 연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그 기관의 운영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4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한 공공데이터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집·관리·보유에 관한 업무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8조(과태료)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1)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 14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는 것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을 갖추는 것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

다. 프로그램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그 밖의 시설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

바. 비상안전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를 설치 및 구비할 것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전담조직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나. 관련 서류의 관리

전담조직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전담조직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3) 전담조직의 운영일지
- 4) 전담조직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카드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지출 보조부
-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상담·사례관리 기록과 관련 서류

다. 그 밖의 사항

- 1) 전담조직은 지원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는 위기아동·청년 전담지원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3) 전담조직은 사례관리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진 방지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또는 조인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전담조직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2) 전담조직의 인력기준(제14조 관련)

1. 배치기준

전담조직에는 전담조직의 장 1명, 팀장 2명 이상, 전담인력 10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2. 자격기준

가.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조직의 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청년 관련

-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전담조직의 전담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 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2호	170	330	500

■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위기가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공공 ☐ 법인(☐ 비영리 ☐ 영리) ☐ 단체 ☐ 기타()	
	주소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기가동·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청년복지 업무에 관한 추진실적 2. 전담조직 운영 계획서(전담조직 운영기준, 인력기준 충족 여부 포함)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지사)

처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지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지사)

위기가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서

전담조직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재)지정·위탁	(재)지정·위탁 일자	
	(재)지정·위탁 사유	

☐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기가동·청년 지원 전담조직으로 (재)지정·위탁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위기가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 취소 통지서

지정·위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지정·위탁 취소	지정·위탁 일자	
	지정·위탁 사유	
	지정·위탁 취소 일자	
	지정·위탁 취소 사유	

☐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기가동·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위기가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연 락 처	(044) 202 - 3702 (044) 202 - 3703